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6. 7. 26.>

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

(앞 쪽)

1. 일반현황

○ 업소명:

○ 소재지:

○ 대표자:

2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

오 염 물질명	배출농도 (mg/L)	할 당 오염부 하량(kg/일)	지 정 배 출량(L/일)	일일유량 (L/일)	지역별 부 과 계 수	배 출기 간(일)	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

○시료 채취일: ○개선 완료일: (개선기간 중 휴무일: 일)

가. 오열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 ---------- 원(A)

나. 초과오염배출량(일일초과오염배출량 × 배출기간)------ kg(B)

일일초과오염배출량 ---------- kg

※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: (일일유량 × 배출농도 × 10^{-6} - 할당 오염부하량) 값과 [(일일유량 - 지정배출량) × 배출농도 × 10^{-6})] 값 중 큰 값

210㎜×297㎜[일반용지70g/㎡(재활용품)]

다. 초과율별 부과계수 ---------- (C)

라. 지역별 부과계수 ---------- (D)

마.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---------- (E)

바. 감 액 ---------- (F)

사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= (A)×(B)×(C)×(D)×(E)-(F)------- 원

가산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×5/100---------- 원

납기 후 부과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+가산금---------- 원

작성일: 년 월 일

작성자: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위 바 항의 "감액"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